

# 뉴욕의 가사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

## 가사 근로자를 위한 정보

가사 근로자와 그 고용주는 2010년 11월 29일 발효한 가사 근로자의 권리장전(Domestic Workers' Bill of Rights)을 포함한 노동법(Labor Law)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[www.labor.ny.gov](http://www.labor.ny.gov)를 참조하십시오.

## 가사 근로자는 누구인가?

“가사 근로자”는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가사 근로자의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.

- 어린아이 또는 환자 또는 연로한 사람을 돌보는 일
- 집안 잡일
- 고용주의 집안에서 행하는 기타 가사 업무

이 법은 아래와 같은 가사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- 해당 고용주의 집에서 일하는 시간제 베이비시터 같이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
- 고용주나 그들이 돌보는 사람의 친척인 사람

## 가사근로자는 다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.

가사 근로자 권리장전을 포함한 뉴욕 주 노동법에 따라, 귀하는:

- **최소한** 최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
-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.5배로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. (만약 고용주의 집안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.)
- 1주일에 하루(24시간)의 휴무일을 가지거나 - 혹은 그 휴무일에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, 귀하는 초과근무수당 수준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.
- 같은 고용주 아래 계속 근무하는 경우 1년에 **최소한 3일**의 유급휴가를 가져야 합니다.

주당 최소 40시간 일을 하는 경우, 귀하는 아래의

적용을 받습니다.

- 귀하가 작업 중 상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 보상보험, 그리고
- 작업 외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그 결과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장애 혜택보험.
- 특정 기관에서 귀하를 노인을 돌보는 것과 같은 “동반 서비스”에 고용한 경우, 초과근무수당과 의무적인 하루 휴일 규칙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만약 귀하가 고용주 혹은 노동부에 이러한 노동법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,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에게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.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전화번호 1-888-469-7365로 전화하거나 [www.labor.ny.gov/workerprotection/laborstandards/workprot/lstdists.shtm](http://www.labor.ny.gov/workerprotection/laborstandards/workprot/lstdists.shtm)에 접속하여 노동부 지역사무소 목록을 찾으십시오.
- 가사 근로자의 권리장전을 통해 귀하는 고용주에 의한 특정 괴롭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하거나, 기타 성적인 언어 혹은 물리적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. 고용주들은 성, 인종, 종교 혹은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귀하를 괴롭힐 수 없으며, 귀하가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보복할 수도 없습니다. 귀하는 법원이나 뉴욕 주 인권부에 정식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귀하는 [www.dhr.ny.gov](http://www.dhr.ny.gov)에 접속하거나 1-888-392-3644(무료)번으로 전화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- 귀하와 가족을 위한 저렴한 건강 보험에 관해 알아 보려면, 뉴욕 주 보건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) 웹사이트 [www.nyhealth.gov](http://www.nyhealth.gov)를 방문하십시오.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“사이트 내용” (“Site Contents”)의 “건강 보험 프로그램” (“Health Insurance Programs”) 버튼을 찾으십시오.

## 뉴욕 주 노동부 분과